

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

(박춘희 의원)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9월 5일

발 의 자: 박춘희 의원

찬 성 자: 심현정, 이창열, 김광성 의원

1. 제안이유

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 「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민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,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, 군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(안 제5조)
- 라.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(안 제6조)
- 마.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및 지원근거(안 제7조)
- 바. 보행안전문화 활성화(안 제8조)
- 사.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, 구성, 운영 규정(안 제9조 ~ 제 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,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: 불임 참조

다. 입법예고: 2023. 8. 14. ~ 2023. 9. 3.(20일간),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3. 8. 3.~ 2023. 8. 30., 의견 없음

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행권”이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.
2. “보행환경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.
3. “보행약자”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는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,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.

1.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
2.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
3.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
4. 보행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

5. 그 밖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
제4조(군민의 권리와 의무) ① 평창군민은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 편안하고

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
③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군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보행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) 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

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.

1. 공공시설물 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

2.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

3.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통행 방법을 개선

4.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

5.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환경 개선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,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수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) ① 군수는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

통행이 많은 도로 중 차도 폭이 과대하거나 유희 공간이 많은 도로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조로 정비한다.

1.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
2. 교통 소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
3.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
4. 가로경관 개선

②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.

③ 노상주차, 도로점용 등 보행 방해 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)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, 매연, 냄새,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보행안전문화 활성화)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1.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
2. 보행불편 사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 접수 활동
3.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 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며 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3.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
 4.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
 5.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거나, 「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운영하는 ‘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’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관련법령>

〈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〉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보행환경”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·생태적·역사적·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.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의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

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의2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 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1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
2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·보행 관련 계획

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
2.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
3.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·보수 및 성능 개선
4.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
5. 보행자길 신설,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
6.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
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
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
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
8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시장 또는

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·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·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,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·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

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
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(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)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, 매연, 냄새,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〈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〉

제7조의4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〉

제7조의4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,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

나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3조(군수의 책무) : 보행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
- 조례안 제5조(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) :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요구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와 유지보수
- 보행자를 위한 그밖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

나. 추계 결과

-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50,000천원,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50,000천원 소요
- 향후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과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2023년 예산 200,000천원에서 매년 예산 300,000천원 이상 소요 예상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평창군 자체수입 및 도비 보조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 김은규
연락처	(033) 330 - 2019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지방세수입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세 출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교통 안전·편의시설 관리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401 시설비 및 부대비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01 시설비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○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○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재원 조달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의존 재원	소 계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	보조금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250,000
	지방세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250,0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	-	-	-	-	-	-
민간자본		-	-	-	-	-	-
해외자본		-	-	-	-	-	-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	-